

# ‘닭·오리 이력제’ 모바일 사육현황 신고안내

출처 : 축산물품질평가원

- ◎ 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2020. 1. 1.부터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은 닭·오리 사육시설의 농장경영자는 매월 5일까지 해당농장의 사육현황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◎ 농장경영자의 편의성을 위한 「모바일 사육현황신고 기능」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시범 발송이 진행되고 있다.



## 「닭·오리 이력제」모바일 사육현황 신고안내 문자 발송 알림

### 1 안내 대상

- ◎ 가금 농장식별번호를 발급받은 농장경영자(18년 사육현황조사)
- 사육현황신고 시행(20년 1월) 대비시범발송으로 준수사항 사전 안내

구분*	닭			오리	기타**	소계
	육계	산란계	토종닭			
농장식별번호	3,947	1,529	785	992	208	7,461

\* 이력관리시스템 등록 기준(2019.8.31.)

\*\* 기타 : 사육현황 축종이 없는 농장

#### [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]

제4조(농장식별번호의 부여) ①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
## 2 문자(SMS) 발송 개요

- ◎ 발송 시기 : 매월 1일 ~ 5일(공휴일과 토요일 제외)
- ◎ 발송처 :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(발신번호 1577-2633)

**[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]**  
 제10조의3(닭·오리의 사육현황 신고) ① 닭·오리를 사육하는 농장경영하는자는 닭·오리의 사육현황 신고서를 해당 월의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(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) 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## 3 신고 방법

### ◎ 모바일 신고 절차



### ◎ 신고안내 문자 내용 및 신고화면

사육현황 신고안내 문자 내용	사육현황신고 화면(URL)
<p>[닭·오리·계란 이력제 사육현황 신고]</p> <p>닭·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 경영자께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 이내에 사육현황을 신고하셔야 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대상 : 최[ ]님</li> <li>■ 농장식별번호(105[ ])</li> <li>■ 신고기간 : 07월01일~05일</li> <li>■ 신고 방법 : 이력지원실(전화, 팩스), 모바일, 이력관리시스템 등</li> </ul> <p>모바일로 신고하시면 편리합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모바일 신고 : <a href="https://betasmart.mtrace.go.kr/smart/dfts/brd/brdSttusSttemntManage/brdSttusSttemnt.do?farmldno=105221">betasmart.mtrace.go.kr/smart/dfts/brd/brdSttusSttemntManage/brdSttusSttemnt.do?farmldno=105221</a></li> <li>■ 문의 전화(이력지원실 1577-2633)</li> </ul>	